

참 고 서 류

금융위원회 귀중

제 출 일:

2019년 10월 30일

권 유 자:

성 명:(주)한국아트라스비엑스

주 소: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 1331번길 185

전화번호:042-620-4242

1. 권유자 · 대리인 · 피권유자에 관한 사항

1. 권유자에 관한 사항

성명(회사명)	주식의 종류	주식 소유 수량	주식 소유 비율	회사와의 관계	비고
(주)한국아트라스비엑스	보통주	5,346,107	58.43%	본인	-

- 당사는 현재 자기주식 5,346,107주를 보유하고 있으며,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제한 됩니다. 또한, 당사의 총발행주식수(보통주)는 9,150,000주이며, 자기주식을 제외한 의결권 있는 주식수는 3,803,893주입니다.

-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

성명 (회사명)	권유자와의 관계	주식의 종류	주식 소유 수량	주식 소유 비율	회사와의 관계	비고
한국테크놀로지그룹(주)	최대주주	보통주	2,848,685	74.89%	최대주주	-
계		보통주	2,848,685	74.89%	-	-

- 주식 소유비율은 총발행주식수 9,150,000주 중 자사주 5,346,107주를 제외한 의결권 있는 주식수 3,803,893주에 대한 비율입니다.

2. 대리인에 관한 사항

성명(회사명)	주식의 종류	소유주식수	회사와의 관계	비고
김 성 철	보통주	10	직원	-
염 영 택	보통주	2	직원	-

3. 피권유자의 범위

2019년10월18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있는 주주 전원

4.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

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해 필요한 의결 정족수 확보

5. 기타 사항

가. 위임권유기간 : (시작일) - 2019년 11월 4일, (종료일) - 2019년 11월 14일

나. 위임장용지의 교부방법

-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하는 방법
- 우편 또는 모사전송에 의한 방법
- 전자우편에 의한 방법(피권유자가 전자우편을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)
-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하는 방법(권유자가 발행인인 경우)

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

인터넷 홈페이지의 주소	-
홈페이지의 관리기관	-
주주총회 소집통지(공고)시 안내여부	-

다. 권유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

수탁자	위탁범위	비고
-	-	-
-	-	-

라.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: (일시) - 2019년 11월 14일 10시
 (장소) -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 1331번길 185
 (본사 2층 대강당)

마. 업무상 연락처 및 담당자 : (성명) - 김 성 철
 (부서 및 직위) - 회계팀 담당자
 (연락처) - 042-620-4242

II.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

□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

가. 후보자의 성명 · 생년월일 · 추천인 · 최대주주와의 관계 · 사외이사후보자 여부

후보자성명	생년월일	사외이사 후보자여부	최대주주와의 관계	추천인
이 호 석	1949.03.02	사외이사	해당사항 없음	이사회
주 현 기	1960.04.16	사외이사	해당사항 없음	이사회
총 (2) 명				

나. 후보자의 주된직업 · 약력 ·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

후보자성명	주된직업	약력	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 역
이 호 석	(주)이밸류인터내셔널 대표 이사	(주)효성무역P.G 철강 Performance Unit 사장 (주)효성무역 Performance Group대표 현) (주)이밸류인터내셔널 대표이사	해당사항 없음
주 현 기	신구대학교 세무회계과 교 수	청운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안진회계법인 공인회계사 현) 신구대학교 세무회계과 교수	해당사항 없음

※ 기타 참고사항

해당사항 없음

□ 정관의 변경

가.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

변경전 내용	변경후 내용	변경의 목적
-	-	해당사항 없음

나.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

변경전 내용	변경후 내용	변경의 목적
<p>제50조(이익배당)</p> <p>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 또는 금전 외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.</p> <p>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.</p> <p>- 신 설 -</p> <p>③ 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.</p>	<p>제50조(이익배당)</p> <p>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 또는 금전 외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.</p> <p>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.</p> <p>③ 회사는 6월 30일 현재의 주주에게 이사회 결의로 상법 제 462조의3에 의하여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.</p> <p>④ 배당은 매결산기말 또는 중간배당 기준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.</p>	<p>주주제안에 따른 중간배당제 신설</p>

※ 기타 참고사항

해당사항 없음

